

예 산 군

우340-800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번지 / 전화(041)330-2211 / FAX330-2215

기획감사실 실장 최봉일

주사 박시영

담당자 김민규
puputman@hanmail.net

문서번호 기감 13131 - 653

시행일자 2001. 6. 18 ()
(경유)

받 음 예산군의회의장

참 조 사무과장

선령			지시
접	일자	6. 19	결재
수	시간		6. 19
번호	335		의사록
처리과	의회사무과	공	의사록
담당자	이경호	날	의사록
심사자		심사일	의사록

제 목 2000 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제출

2001. 5. 21~6. 9(20일간)까지 실시한 2000 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를 불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끝.

불 임 : 2000 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1부. 끝.

예 산 군



2000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처분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 리 전 말	학 인		증빙서 번 호	처리종 결여부
				담당	과장		
서 정	세 출 예 산 관理의 부적정	보궐 선거관리 인부임 미집행	앞으로 불용예산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추경정리 등을 통하여 삭감조치 하겠음.		20		완 결

2000.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처분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 전 말	화 인		증빙서 번호	처리종결 여부
				담당	과장		
시정	수해이재민구호비 예산관리의 부적정	당초 예산에 편성된 수해이재민 구호비를 집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추경예정리, 삭감등 조치를 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였음은 부당함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완결

2000 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산림축산과, 산림보호담당)

처분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 리 전 말	확 인		증빙성 번호	처리 종결 여부
				담 당	과 장		
시정	○ 세출예산관리의 부적정 (세출예산 미집행)	○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 을 기하고 불필요한 예산 발생시 당해연도 추경에 정리, 삭감등의 조치를 취 하여 성립된 예산이 미집 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산불 제보자에 대한 보 상금으로서 부득이 지금 대상자 없어 불필요한 예 산 발생될 경우 당해연도 추경 및 삭감등의 조치를 취하여 성립된 예산이 미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함				종결

2000 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처리전말 보고서

(산업과 농산담당)

처분 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 전 말	화인		증빙서 번호	처리종결 여부
				담당	과장		
시정	<input type="checkbox"/> 세출예산관리의 부적정 ○ 내용 : 세출예산은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음에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하였음은 부당함	○ 모든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될 때에는 당해연도 추경에 정리, 삭감등의 조치를 취하여 성립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바람	○ 당초에 병해충 항공방제을 삼교농협에서 신청하여 사업코자 하였으나 항공방제 사업비 중 농약대를 삼교농협에서 미부담으로 사업이 포기되게 되었고 ○ 도에 전의하여 항공방제사업비를 공동방제 사업비로 변경하려고 전의 하였으나 추경에 반영되지 못하였음. 이후 정리추경에 본사업비를 삭감하지 못하였음 ○ 앞으로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전액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완결

2000 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처리전말 보고서

(산업과 농정기획담당)

처분 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 전 말	화인		증빙서 번호	처리종결 여부
				담당	과장		
시정	<input type="checkbox"/> 세출예산관리의 부적정 ○ 내용 : 세출예산은 당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위하여 해연도에 필요한 사업을 기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전산입력 하고자 하였으나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음에도 당초 예산에 추경에 정리, 삭감등의 조 편성된 예산 전액을 불치를 취하여 성립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 용처리하였음은 부당함	모든 사업을 면밀히 분석 당초에 농업경영인 관리를 위하여 S/W를 구입하여 발생될 때에는 당해연도 한국 농어민신문사에서 S/ W를 제작하여 무료로 배 부하였기 때문에 별도 구입 의 필요성이 없었음 그리고 앞으로는 불용액에 대하여 는 당해연도 추경에 정리, 삭감코자 하겠음	 				완결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처리전말보고서

(건설과 담당)

처분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 전 말	확인인		증빙서번호	처리종결여부
				담당	과장		
시정	세출예산관리의 부적정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음은 부당함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될때에는 추경에 정리 삭감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미집행 불용 예산액이 없도록 조치			-	완결

2000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민방위 재난관리과 민방위담당)

제목 요약	내용	처리인 과장	증빙서 번호	처리종결 부
시정	<p>세출예산은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음에도 당초 예산(무전기 구입)에 편성된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하였음은 부당함.</p>	<p>앞으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될 때에는 추경에 정리·삭감등의 조치를 취하여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p>	 	완결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처분 요구	제 목	처분 지시 요구	처리전말	확 인		증빙서 번 호	처리 종결 여부
				담당	실장		
주의	예산전용 사용의 부적정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예기치 못한 사태를 대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당초확보된 예산을 타목적으로 사용하고 부족된 예산을 별도 전용 사용한 것은 부당함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음	완료

2000 회계연도 결산감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담당

처분 요구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전 말	확 인		증빙서 번 호	처리종결 여 부
				담당	실과장		
	예비비 지출의 부적정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있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고 있음에도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사업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부당함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 하겠음				여

2000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 보고서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담당)

처분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전말	확인		증빙서 번호	처리종결 여부
				담당	과장		
시정	예비비운영 및 예산편성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미화원인건비는 계속되는 사업인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를 민간위탁할 것을 이유로 정상 확보하여야 할 인건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부당함. ○ 예산읍지역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을 2000.7.1부터 실시 계획으로 예비비를 2000. 6. 26 결의하여 확보한 후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부당함. 	○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주의하여 업무처리에 임하겠습니다				여

2000 회계연도 결산감사결과 처리전말 보고서

(도시과 도시담당)

처분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 전 말	확 인		증빙서 번 호	처리종결 여부
				담당	과장		
주의	○ 이월사업추진소홀 (주교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의 6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각종 사업의 이월사유가 대부분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 각종사업 추진에 있어 공사 발주전에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주요사업 추진 시 공사 발주전에 토지주와 충분히 협의후 사업을 발주하여 토지 및 지장물 손실 보상협의지연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완료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처리전말보고서

(건설과)

(감사)

처분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전말	확인		증빙서변 호	처리종결 여부
				담당	과장		
시 정	이월사업 추진 소 홀	공사 발주전에 토지주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워지 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추진이 지 연되고 있음	앞으로 주요사업 추진시 공사 발주전에 토지주와 충분히 협의후 발주하여 토지및장물 손실보상 협 의 자연등의 사유로 이월 되는 사업이 없도록 조치			-	완결

2000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예산을 총무담당)

처분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 전 말	화 인		승명서 번호	처리 등급 이 부
				담당	과장		
시 정	이월 사업 추진 소홀	앞으로 주요사업 추진시 공사 발주전에 토지주와 충분히 협의후 발주하여 토지 및 지장물 손실 보상협의 자연등의 사유로 이월 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기 바람.	앞으로 토지주와 협의 가 이루어진 후 공사를 발주하여 이사한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한				완 선

具.

2000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문화공보실 공보담당)

처분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전말	확인		증빙서 번호	처리종결 여부
				담당	실장		
시정	2000년 군정특집 광고 업무추진 미흡	각 신문사에 게재하는 군정 특집 광고는 주요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수단으로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에도 시기적으로 일부 행사시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게재내용도 행사성 내용으로 일괄하고 있으며, 일부는 중앙지에 시급하지 않고 광고를 게재하는 등 군정 특집광고의 목적과 임치되지 않고 있음	앞으로 군정홍보 내용과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효율적인 군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광고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음			2000. 10. 20 2000. 10. 20	완결

2000 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 지역경제과 공업담당 》

처분요구	제 목	처 분 지 시 요 구	처 리 전 말	확 인		증빙서 번 호	처리종결 여부
				담 당	과 장		
주 의	예산집행의 부적정	<p>당해년도 예산을 편성 운용함에 있어 예산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 수립하여 적정하게 편성 운용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과다한 불용액(농공단지관리대장 및 서식인쇄비 800천원 중 650천원)을 발생시켰으며 특히 집행 잔액이 많을 경우 정리추경에 이를 삭감 조치하여야 하나 미조치하여 적정한 예산운용이 되지 못하였음.</p> <p>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사용잔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하기 바람.</p>	<p>농공단지관리대장및서식인쇄비는 공장관리 프로그램의 보급에 따라 소요액이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정리추경시 동일 목에 편성된 농공단지재분양도지감정수수료 예산 위주로 잔액(9,600천원)을 삭감하여 인쇄비 예산잔액이 불용 처리되는 결과가 되었음.</p> <p>앞으로 동일 목에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세목별로 불용액을 삭감하여 적정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음.</p>			-	여

2000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도시과 도시담당)

처분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전말	확인		증빙서 번호	처리종결 여부
				담당	과장		
주의	예산집행의 부적정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운용함에 있어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수립하여 적정하게 편성운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잔액이 과다할경우에는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기바람	앞으로 가로등에 대한 읍면별 고장수요를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한후 집행함으로서 고장가로등에 대한 수선과로등수선예산을 과다하게 불용하였으므로 예산편성을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사용잔액이 과다할경우에는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기바람				완료

2000회계년도 결산감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도시과 상·하수도 담당)

처분 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전말	확인		증빙서 번호	처리종결 여부
				담당	과장		
	○ 예산 집행의 부적정 (하수도특별 회계)	○ 2000회계년도 예산을 편성 운 용함에 있어 예산은 사전에 사 업계획을 철저히 검토 수립하여 적정하게 편성 운영되도록 하여 야 함에도 「하수도 준설인부 임」에 과다한 불용액을 발생시 켰으며 추경에 이를 삭감조치하 여야 하나 미조치하여 적정한 예산운용이 되지 못하였음.	○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 정을 기하고 사용잔액이 과다할 경우 추경예산에 삭감하여 효율 적인 예산운용을 하겠음.				완료

2000 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처리전말 보고서

(산업과 유통양정담당)

처분 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 전 말	확 인		증빙서 번호	처리종결 여부
				담당	과장		
시정	<input type="checkbox"/> 예산집행의 부적정 내용 : 2000년도 예산을 편성 운용함에 있어 예산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 수립하여 적정하게 편성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농산물유통교육민간 실비보상금을 과다하게 불용시켰으며 특히 집행 잔액이 많을 경우 정리 추경에 이를 삭감조치 하여야 하나 미조치하여 적정한 예산운영이 되지 못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사용잔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기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정리추경에 삭감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겠음 				완결

2000 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처리전말 보고서

(산업과 농정기획담당)

처분 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 전 말	확인		증빙서 번호	처리종 결여부
				담당	과장		
시정	<input type="checkbox"/> 예산집행의 부적정 내용 : 2000년도 예산을 편성 운용함에 있어 예산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 수립하여 적정하게 편성 운용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농정심의회 참석 위원수당을 과다하게 불용시켰으며 특히 집행잔액이 많을 경우 정리추경에 이를 삭감초치 하여야 하나 미 초치하여 적정한 예산운용이 되지 못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사용잔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기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정리추경에 삭감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겠음 				완결

2000 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보건소)

처분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전말	화인		증빙서 번호	처리종결 여부
				담당	소장		
시정	방역소독약품 구입 재료비 예산집행부적정	당해연도 예산을편성 운용함 에 있어 예산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수립하여 적정하게 편성 운용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읍,면의 우물소독약품 비축량이 충분하여 정리추경에 2,540,000원을 삭감 조치 하여야 하나 불용처리 하였음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사용잔액이 과다할 경우 에는 삭감조치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결

2000 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보건소)

처분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 전 말	화인		증빙서 번호	처리종결 여부
				담당	소장		
시 정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예산집행부적정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 운용함 에 있어 예산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수립하여 적정하게 편성 운용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근무불성실 공중보건의 2명 분에대한 진료활동장려금 3개월분을 지급정지하여 3,450,000원을 정리추경에 삭감 조치 하여야 하나 불용처리 하였음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사용잔액이 과다할 경우 에는 삭감조치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 결

2000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민방위 재난관리과 민방위담당)

처분 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 리 전 말	확 인		증빙서 번 호	처리종결 여 부
				담 당	과 장		
시 정	예산집행의 부적정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운영함에 있어 예산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 수립하여 적정하게 편성 운용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과다한 불용액(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을 발생시켰으며, 특히 집행잔액이 많은 경우 정리 추 경에 이를 삭감 조치하여야 하 나 미조치하여 적정한 예산운용 이 되지 못하였음.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사용잔액이 과다할 경 우에는 추경에 삭감하 여 효율적인 예산운용 을 하겠음.				완 결

2000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민방위 재난관리과 민방위담당)

처분 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 전 말	확 인		증빙서 번 호	처리종결 여부
				담 당	파 장		
시 정	예산집행의 부적정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운영함에 있어 예산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 수립하여 적정하게 편성 운용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과다한 불용액(민방위교육실기 강사수당)을 발생시켰으며, 특히 집행잔액이 많은 경우 정리 추경에 이를 삭감 조치하여야 하나 미조치하여 적정한 예산운용이 되지 못하였음.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사용잔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추경에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겠음.				완 결

2000 회계연도 결산감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담당

처분 요구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전 말	화 인		증빙서 번 호	처리종결 여 부
				담당	실과장		
	예산 집행의 부적정	집행잔액이 많을 경우 추경에 이를 삭감 조치하여야 하나 미조치하여 적정한 예산 운용이 되지 못하였음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잔액이 과다할 경우 에는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여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처리전말보고서

(건설과 담당)

처분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 전 말	확 인		증빙서번호	처리종결부
				담당	과장		
시 정	수덕사 집단시설 지구정비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 예산에 덕사로 지내 개인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 에서 지급할수가 없어 불용조치하는 것은 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관련법규 연찬및 세부추진 계획을 심사숙고한 후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 지도록 조치			-	완 결

2000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처분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전말	확인인		증빙서 번호	처리종결부 여부
				담당	과장		
주의	공유재산관리부적정	예산시장 정비사업 편입토지 매입시 의회 의결없이 2000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당해 연도 7월과 8월에 이미 취득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아 관련법규에서 정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 관리가 되지 못하였음. 앞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시에는 악년도 예산편성 시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바람.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에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악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군 의회에 제출하여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여

2000회계년도 결산감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도시과 상하수도 담당)

처분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전말	확인인		증빙서 번호	처리종결 여부
				담당	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예산액 책정의 부적정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회계년도의 세입추계를 정확히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이 실수납액 보다 과소 계상되어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회계연도 예산편성시 세입추계를 정확히하여 적정한 세입·세출예산이 계상되도록 하겠음. 				완료

2000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

처분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 전 말	확인		증빙서 번 호	처리종 결여부
				담당	과장		
시정	장기체납액에 대한 조치미흡	95년도 소송비용 청구에 의해 징수결정된 체납액(870,000원)을 징수독려하였으나 체납자의 생활 형편 이유로 징수하지 못하고 행정조치 없이 징수난이자로 관리	강력한 행정조치 및 독려로 체납액이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		처리중

2000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처분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전말	확인인		증빙서 번호	처리종결부
				담당	과장		
주의	주차장 특별 회계 세입 징수의 소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자에 대한 유형별 징수계획을 보다 치밀하게 수립하여 조기에 징수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합동징수반 징수계획 지경 91110 - 1778(2001. 6. 15) 호에 의거 군·읍면 합동징수 반을 편성 체납사유별 징수 대책을 수립 시행 추진			제1호	여

문서번호	지경 91110 - 118
보존기간	3년
보고일자	2001. 6. 15.

★ 기안자	담당	과장	부군수	군수	결
장재우	신정호	-	-	최용기	재
협조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계획

예 산 군

지역경제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합동징수반 징수계획

-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업무특성상 납세자의 저항이 매우 강하므로 주·정차 업무를 관장하는 교통분야 공무원으로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며, 특히 읍면간 교차지원이 가능하도록 2~3개 읍면을 한 단위로 합동징수반을 편성 효과 극대화

기 간 : 년 중

합동징수반 : 5개반 14명(편성표 덧붙임)

중점 추진사항

- 주·정차위반 고질체납자에 대한 집중독려 및 실태파악
- 최근 10년간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직권말소차량 체납액 정리
- 고액체납자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예고
- 징수불능문에 대한 결손처분

체납사유별 징수대책

- 납세태만 : 전담 징수책임자로 하여금 방문하여 자동차 소유권이전, 폐차 등의 행정행위를 할 수 없음을 통보
- 재무자재 부족 : 납부가능예정일을 약속받아 지정기일까지 납부 독촉
- 기 타 : 주민등록 전산을 통한 주소지 파악을 통한 관할 시·군·구에 징수 협조문서 발송

일정별 추진계획

- 2001. 6. 18 ~ 7. 31 : 고액체납자에 대한 방문 및 전화납부 독려
 - 2001. 8. 1 ~ 8. 31 : 합동징수반 운영
- ※ 관외체납분은 교통행정담당에서 전담하여 납부독려 및 징수

행정사항

- 징수전담반에서는 매월 말일까지 덧붙임 서식에 의거 징수실적 제출
- 월별 징수실적을 분석하여 사유별 대책 수립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사유 분석

과년도 체납액 : 3,855건 154,210천원

징수가능분 : 2,490건 99,600천원

(단위 : 건, 천원)

구분	계		납세태만		재무자재력부족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군세	2,490	99,600	1,350	54,000	980	39,200	160	6,400

징수불능분 : 1,365건 54,600천원

(단위 : 건, 천원)

구분	계		행방불명		무 재 산		자동차미소유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군세	1,365	54,600	197	7,880	386	15,440	457	18,280	325	13,000

체납액 합동징수반 편성표

구 분	대상지역	징수반 편성		비 고
		반 장	반 원	
계	5개반		14명	
1반	예산	장태복	정종훈	
2반	삼교, 신암, 오가	전영한	강숙자, 정상철, 안낙규	
3반	광시, 대흥, 응봉	장낙연	이준호, 안도원, 박규성	
4반	덕산, 봉산, 고덕	김기원	유정순, 김종영	
5반	관외	방한일		

* 합동징수반 운영요령

- 동일 징수반에 편성된 읍면은 합동으로 해당지역에 대한 징수
- 군청 교통행정담당 공무원과 인근 2~3개 읍면을 동일 징수반에 편성하여 읍면간 합동 및 교체징수로 상호간의 정보교환 실시

결과보고서

명예 의거 2001.에 출장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독려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합니다.

아래

〈징수반〉

체 납 자		세 목	체납액	독려사항	비 고
성 명	주 소				

- 징수실적 : 건, 천원(누계 : 건, 천원)
- 납부독려 : 건, 천원(누계 : 건, 천원)

결과보고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예 산 군 수 귀하

※ 주·정차위반 처벌규정 비교

구 분	경찰관서	행정관서																				
관개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 																				
단속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읍면 공무원으로서(교통행정분야에 근무)군수가 임명한 자(시행령 제10조의2) 																				
단속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차 방법의 변경 또는 이동명령 																					
벌칙금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성격</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료 (형사별 - 범칙금) (법제113조, 제114조), (영제73조)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행정별 - 질서벌) (법제115조의2) </td> </tr> <tr> <td>금액</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00원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00원 </td></tr> <tr> <td>가산금</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0 (법제19조) </td><td>없음</td></tr> <tr> <td>납부기한</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일이내 (법제119조)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일이내 (영제72조의3) </td></tr> <tr> <td>수입금귀속</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금고 </td></tr> <tr> <td>제납에 대한 강제이행</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 (법제120조) ○ 즉결심판에 출석치 않을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영제76조)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체납처분규정에 의거 강제징수 (영제72조의2) ○ 적발일로부터 10일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영제72조의 2) ○ 과태료 부과에 이의있을시 30일내 군수에게 이의 제기 ○ 이의제기시 비송사건 질차법에 의해 법원의 과태료 재판 (법제115조의2) </td></tr> <tr> <td>구제절차</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결심판에 출석 </td><td></td></tr> </table>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료 (형사별 - 범칙금) (법제113조, 제114조), (영제7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행정별 - 질서벌) (법제115조의2)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00원 	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0 (법제19조) 	없음	납부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일이내 (법제1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일이내 (영제72조의3) 	수입금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금고 	제납에 대한 강제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 (법제120조) ○ 즉결심판에 출석치 않을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영제7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체납처분규정에 의거 강제징수 (영제72조의2) ○ 적발일로부터 10일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영제72조의 2) ○ 과태료 부과에 이의있을시 30일내 군수에게 이의 제기 ○ 이의제기시 비송사건 질차법에 의해 법원의 과태료 재판 (법제115조의2) 	구제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결심판에 출석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료 (형사별 - 범칙금) (법제113조, 제114조), (영제7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행정별 - 질서벌) (법제115조의2)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00원 																				
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0 (법제19조) 	없음																				
납부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일이내 (법제1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일이내 (영제72조의3) 																				
수입금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금고 																				
제납에 대한 강제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 (법제120조) ○ 즉결심판에 출석치 않을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영제7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체납처분규정에 의거 강제징수 (영제72조의2) ○ 적발일로부터 10일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영제72조의 2) ○ 과태료 부과에 이의있을시 30일내 군수에게 이의 제기 ○ 이의제기시 비송사건 질차법에 의해 법원의 과태료 재판 (법제115조의2) 																				
구제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결심판에 출석 																					

2000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

처분요구	제 목	처분지시요구	처리 전 말	화 인		증빙서 번호	처리종결여부
				담당	실장		
시정	개발부담금 정수(결손) 소홀	건설교통부에 결손 처분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신설하여 결손처분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여 하루 속히 결손처분 조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건설교통부 소관 관련법(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개정시 및 시장·군수 협의회 회의시 관련법을 개정 건의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정 건의하여 정수 및 체납액의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결